

「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인용사항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, 민간 투자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 방식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제명 정비

- 1) (당초)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
(변경) 구미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

나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사항 정비(안 제1조, 제4조, 제7조)

다. 위원회 구성, 실무위원회 등 정비(안 제2조, 제3조, 제5조, 제7조, 제10조)

라. 용어 및 문구 등 정비(안 제2조~제4조, 제7조~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,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령인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과 현행 조례 간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, 위원회 운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

○ 검토 결과,

- 실무위원회 운영을 해당 안전 심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게 함으로써,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각 안전의 성격에 맞는 전문가를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(안 제3조)
- 종합적으로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기하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 그간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개최사례가 없었더라도 상위법령인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이 개정되고 20여년이 지난 시점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자치법규 관리의 적시성 측면에서 아쉬우며,
 - ※ 「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➡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
으로 개정(2005년)

- 이처럼 장기간 법령과 조례간의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 발생 시 신속하고 적법한 대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,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상위법령의 제·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자치법규 정비 지연에 따른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